



## 독일 신분법전면개정법(Personenstandsrechtsreformgesetz-PStRG)<sup>1)</sup>의 개정 배경과 주요 내용

### I. 신분법의 개정 과정 및 구성

#### 1. 개정 과정

독일에서는 1958년에 제정된 신분법(Personenstandsrechts)의 광범위한 개정을 목표로 한 연방내무부의 초안 작업이 오랜 기간 동안 현실적 문제에 의해 번번이 중단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각 주(Land)의 적극적 협력에 의해 마침내 중요한 입법사항과 개정의 목적에 있어서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연방상원(Bundesrat)은 2005년 10월 14일 연방정부의 개정법률 초안에 대해 광범위한 입장표명을 결의하였고, 연방상원의 개정의견의 상당 부분이 연방하원(Bundestag)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본 개정법률은 2007년 2월 19일 연방상원의 동의 하에 연방하원에서 통과되었고, 2007년 2월 23일 관보에 게재되었다. 개정신분법(Personenstandsgesetz-PStG)의 발효 시점은 일부조항을

제외하고 2009년 1월 1일이다.

#### 2. 개정 목적

이 법은 1958년에 제정된 신분법(Personenstandsrechts)의 광범위한 개정을 목표로 하며 (여기서 'Personenstand'란 가족법의 특징에서 나오는 개인의 지위를 말하며, 출생·결혼에 관한 데이터, 동거파트너관계증명과 사망증명, 성명권 등을 포함한다(PStG 제1조). 특히 등록과정의 전산화와 시민과 관청간의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 3. 구성

이 법(PStRG)은 크게 총 5개의 Artikel(항목)로 구성되어 있다. Artikel 1은 개정신분법(PStG-총 12장 78개의 조문으로 구성), Artikel 2는 개정신분법(PStG)에 따른 관련 연방법의 변경, Artikel 3은 개정신분법(PStG)에 따른

\*\*\*

1) 동법의 정식명칭은 Gesetz zur Reform des Personenstandsrechts 이다. 이하 'PStRG'라 한다. 신분법전면개정법(PStRG)과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개정신분법(Personenstandsgesetz - 이하 'PStG'라 한다)은 서로 다르다.



관련 법규명령의 변경, Artikel 4는 통일된 명령의 순위를 위한 복귀(Artikel 3에 근거하여 변경된 법규명령은 관계위임명령에 의해서 변경되어질 수 있다), Artikel 5는 효력규정과 무효규정으로 되어 있다.

이 법(PStRG)에서 가장 중요한 Artikel 1 개정신분법(PStG)의 구성을 살펴보면, 제1장(제1조~제2조)은 일반개념, 제2장(제3조~제10조)은 신분대장의 도입, 제3장(제11조~제16조)은 혼인, 제4장(제17조)은 동거관계증명, 제5장(제18조~제27조)은 출생, 제6장(제28조~제33조)은 사망, 제7장(제34조~제45조)은 특별등록, 제8장(제46조~제53조)은 내용수정과 사법절차, 제9장(제54조~제68조)은 신분대장의 증명력과 사용, 제10장(제69조~제72조)은 강제수단·벌금규정·특징·요금, 제11장(제73조~제74조)은 명령에의 위임, 제12장(제75조~제78조)은 경과규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기존의 오래된 신분법을 새로이 디지털시대에 맞게 디지털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전자신분대장을 도입하고, 기존의 문서신분대장의 운용방향 등을 규정하고 있다.

## II. 개정의 주요 내용

### 1. 기존 문서신분대장 대신에 전자신분대장 도입

신분대장은 전자적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신

분대장의 등록은 매년 일련번호가 매겨져야 하며, 관할 신분청의 진술에 의해서 성(Familienname)을 기록해야 한다(PStG 제3조 제2항).

이러한 등록이 끝난 뒤에는 전자신분대장(elektronischer Personenstandsregister)<sup>2)</sup>에 저장되어야 한다(PStG 제4조 제1항).

### 2. 신분대장의 유효기간 설정

신분대장과 전자신분대장의 계속기간은 다음과 같다.

- ① 혼인신고와 동거신고 : 80년
- ② 출생신고 : 110년
- ③ 사망신고 : 30년(PStG 제5조 제5항)

### 3. 그 외의 신분대장(Personenstandsregister)에의 등록을 통한 호적부의 대체

호적부(Familienbuch)는 2008년 12월 31일 이후에는 혼인신고사무(Heiratseinträge)를 수행한다. 기존의 혼인대장(Heiratsbuch)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PStG 제77조 제2항).

### 4. 문서신분대장(Personenstandsbücher)의 새로운 사용규칙 제정

신분상태원본(Personenstandsurkunde)은 그 등록당사자와 배우자, 동거인, 존속, 비속의 신청에 의해서 교부되어 질 수 있다. 그 외의 제3자는 법률적 이해관계인에 한해서 교

\*\*\*

2) 이 전자신분대장을 Sicherungsregister 즉, 안전신분대장이라고도 한다(PStRG 제4조 제1항).

부될 수 있으며, 16세 이상인 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PStG 제62조 제1항).

### 5. 효력 발효

제67조 제4항, 제73조, 제74조, 제77조 제1항은 관보에 게재한 다음 날 즉시 그 효력을 발한다. 그 외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한다(PStRG Artikel 5 제1항 및 제2항).

## III. 기대 효과와 전망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새 신분법의 발효시점은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2009년 1월 1일이다. 이 시점까지 모든 관계자(연방으로부터 주, Kommun<sup>3)</sup>에 이르기까지는 새신분법으로의 전환의 준비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연방의 법규명령과 그에 상응하는 직무명령의 조정뿐만 아니라, 연방차원의 시행법(Ausführungs-

gesetz)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신분대장(Personenstandsregister)의 디지털화 작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광범위한 작업이 요구된다. 전술한 관련 개인신상의 디지털화 작업은 신분청(Standesamt)의 업무과정을 단축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분청(Standesamt)의 업무에 효율성을 가져올 것이 기대되며, 또한 무엇보다도 서로 다른 신분청간의 전자정보통신의 가능성을 열 것이 기대되고 있다. 이는 신분청(Standesamt) 상호간의 정보공유와 부부동거증명(Begründung von Lebens-partnerschaft)에 있어 관청간의 협력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홍 강 훈

(독일 주재 외국법제조사원)

\*\*\*

3) 기초자치단체를 말함. 한국의 시·읍·면에 해당한다.